



COVID-19 산업별 지침:

소매업

2020년 7월 29일

covid19.ca.gov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 디렉터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에게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COVID-19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이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인프라 업계 직원들을 비롯하여 산업별 또는 직업 그룹별 COVID-19의 감염자 수와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의 예로는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 수감 시설, 식품 제조, 창고, 육류 가공 공장,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자택체류 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직원과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주요 예방 방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 ✓ 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직원 및 고객/손님의 안면 가리개 사용
- ✓ 자주 손 씻기 및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 ✓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COVID-19 예방 계획 및 기타 예방 수칙 교육

또한, 직장 내 새로운 감염자를 식별하고, 식별 시 신속하게 개입하며 공공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중단시키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

본 문서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용 업무 공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지침은 법령이나 규제, 단체 교섭을 비롯하여 직원의 권리 일체를 취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운티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주 직업보건안전관리국(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Cal/OSHA)의 규정과 같은 일체의 기존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괄적인 것이 아닙니다. COVID-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공공 보건 지침 및 주/지역 명령에 대한 변화에 대해 항상 최신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직업보건안전관리국(Californ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Cal/OSHA)은 COVID-19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Cal/OSHA 지침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사업체 및 고용주들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6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u>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u>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및 직장 환경에서 대중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시민은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직장 밖에서 업무 수행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중 속에서 사람들과 직접 상호 교류하는 경우
- 대중 속의 사람들이 업무 시점에 같은 공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 속의 사람이 방문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음식이 준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포장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 시설과 같은 공용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곳을 걸어서 지나가는 경우
-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개인의 가정이나 거주지 제외)
- 승객이 있을 때 대중 교통 또는 보조교통 차량, 택시, 자가용 서비스 또는 승차 공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승객이 없을 때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u>지침</u>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상황에서는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안면 가리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는 직원이 질환으로인해 이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최하단 가장자리 부분에 길게 덮는 천(드레이프)이 부착된 안면보호대와 같은 비제한적 대체품을 실행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직원의 질환 상태가 이와 같은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제공해야합니다.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체는 <u>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u>의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을 인지하여야 하며, 대중 속의 사람이 <u>지침</u>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체에서는 고객, 의뢰인, 방문객 및 직원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예외 사항을 다루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 공간별 특정 계획

- 모든 위치에서 문서화된 직장별 특정 COVID-19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업무 영역 및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며, 각 시설에서 해당 계획을 구현하도록 담당 직원을 지정합니다.
- <u>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u>을 직장별 특정 계획에 반영하고 예외 사항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시킵니다.
- 직원 또는 고객 중 COVID-19 감염자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업소가 위치한 현지 보건 부서의 연락처 정보를 명시합니다.
- 직원 및 직원 대표와 직장별 계획에 관해 교육 및 전달하고, 직원 및 직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립된 계획 및 문서를 준수하는지 해당 시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식별한 결함을 수정합니다.
- 모든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여 작업 관련 요소가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 <u>CDPH 지침</u>에 따라 직장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 감염된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6피트 이내 15분 이상 동안)한 사람을 찾아내고 COVID-19 양성 직원을 격리하고 밀접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아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OVID-19 발병을 초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 <u>COVID-19</u>에 대한 정보 및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COVID-19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기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 CDC 지침에 따라 체온 또는 증상 확인 등 자택 내 자가 선별 검사 방법.
- 흉부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포함하여 현기증 또는 창백한 입술이나 얼굴 등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근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 o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이나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증상 발현, 인후통, 코막힘이나 콧물, 구역질, 구토 또는 설사와 같이 <u>CDC가 언급한</u> COVID-19 증상이 직원에게 나타난 경우

- o 또는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격리 해제되지 않은 경우
- 또는 지난 14일 내에,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사람과 접촉했고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즉,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는 경우).
-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직원은 증상이 처음 발현한 이후 10일이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지난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발열을 겪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없는 직원은 첫 번째 COVID-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또는 직원이 CDC 지침에 따라 개수대 또는 손 세정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60%의 에탄올(권장) 또는 70%의 이소프로판올(지켜보지 않는 동안에도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경우에만)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 근무 시간 및 근무 시간 외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아래 물리적 거리두기 항목 참조).
-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안면 가리개 사용:
 - o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아닙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 씻기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o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이야 합니다.
 - o 직원은 얼굴 커버를 사용하거나 조절 후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o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o 안면 가리개는 공유해서는 안 되며, 각 교대조 후 세척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u>안면 가리개 사용에 대한 CDPH 지침</u>에 포함된 정보로, 본 지침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비롯하여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업무 규칙, 관행을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 내 독립 계약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 직원들이 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해 적절히 교육을 받고 필수 용품과 PPE를 갖추도록 합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공급하는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COVID-19 관련 병가 및 산재 보상금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페이지에서 참조하십시오. 본 페이지는 <u>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안</u>에 의거한 근로자의 병가 권리 및 주지사 행정 명령 N-62-20에 의거하여 해당 명령이 유효한 시기 동안 산재 보상 혜택 및 COVID-19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될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 교대 근무 시작 시 모든 직원 및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판매업체나 계약업체, 기타 직원에 대한 체온 점검 또는 증상 선별 검사 제공. 체온 점검/증상 선별 검사 담당자가 최대한 다른 직원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가정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이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선별 검사의 대체 방안으로 적합하며, 반드시 직원은 자신의 근무 시간에 출근하기 위해 자택에서 나오기 전에 선별 검사를 해야 하고 위의 직원 교육용 주제 섹션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CDC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은 자택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직원이 눈 보호 장비 및 장갑을 비롯한 모든 필수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제공해야 하고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고객과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계산원, 물건을 담아주는 직원 및 기타 직원을 위한 보호 조치가 포함됩니다.
- 고용주는 일회용 장갑 사용이 잦은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예: 증상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많은 사람이 만진 품목을 다루는 직원).
- 또한 직원은 반드시 배달된 물품을 차에서 내리고 보관할 때 보호 장비를 지급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직원은 배달된 물품이 훼손된 흔적이 있을 경우 상품을 창고 및 시설에 보관하기 전에 해당 상품을 검사하고 살균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소매 업체에서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지판을 게시하여 일반인들에게 얼굴 가리개 착용 및 물리적인 거리 두기 수칙 준수 의무를 잊지 않게 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 절차

- 휴게실, 식사 공간과 계단, 계단 통로, 에스컬레이터, 난간 및 엘리베이터 조작 버튼 등이 있는 입구 및 출구 공간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역을 철저하게 청소하십시오. 쇼핑 카트, 장바구니, 컨베이어 벨트, 계산대(셀프 계산대 포함), 스캐너, 계산대 전화기, 휴대용 장치, 카운터, 문 손잡이, 선반, ATM PIN 버튼 패드, 고객 지원용 전화기 버튼, 손 세정 시설 등 자주 사용하는 시설의 표면을 자주 살균하십시오.
- 화물 운반대, 사다리, 운반 카트, 출퇴근 기록기, 결제 포털 단말기 및 스타일러스 및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종 공용 장비를 청소 및 소독하십시오.
- 손길이 닿는 각종 시설들의 표면을 근무 시간을 교대하는 사이 또는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청소하고, 특히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설의 표면, 도구, 고정식 장비 및 이동식 장비 조작 버튼 및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종 시설의 표면은 더 자주 청소하십시오.
- 고객이 드나드는 입구 및 출구, 계산대, 탈의실에 손 소독제 및 살균 물티슈와 등의 적합한 위생 용품을 비치해 주시고, 제품을 사용하여 적절한 위생 용품을 갖춘 고객 교체 방을 설치하고, 모든 일선의 접객 직원(예: 계산원)에게 개인용 손 소독제를 지급해 주십시오.
- 이러한 위생 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항상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비누와 종이 타월, 손 소독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u>레지오넬라병</u> 및 물과 관련된 기타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급수 설비 및 물과 관련된 장치(예: 음수대, 장식용 분수)가 시설 폐쇄 기간 연장 후에도 사용하기 안전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십시오.
- 직원 개인 위생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티슈, 비접촉식 쓰레기통, 손 세정용 비누, 손 씻기 충분한 시간, 알코올을 주 성분으로 하는 손 소독제, 살균제 및 일회용 타월이 해당될 것입니다.
- 소독용 화학물질 선택 시, 고용주는 <u>미국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승인</u> 목록에 수록되었으며 COVID-19에 대해 사용하도록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 사용 설명서를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병원체에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나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테이블스푼),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한 최소 70%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직원에게 화학물질 위험과 제조업체 지침, 환기 요건, 안전한 사용을 위한 Cal/OSHA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척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보건부가 권장한 <u>천식 환자에게 안전한 청소 방법</u>을 따르고 적절히 환기를 합니다.

- 정기적이고 철저한 청소 및 제품 진열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매장 영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변경하십시오. 관계자들이 다른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진열 시간에 시간차를 두십시오.
- 직원이 교대 근무 중 청소 방침을 실천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업무는 직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일환으로 근무 시간 내로 배정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제3자인 청소 업체에 외주 용역을 주는 방식을 이용하면 청소에 대해 충족시켜야할 요건이 늘어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되도록이면 움직임 감지 조명,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자동 비누 디스펜서 및 종이 타월 디스펜서, 출퇴근 시간 기록 카드 시스템 등의 핸즈프리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 고객들에게 직불 카드 또는 신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예를 들면 안내 표지판을 통해서)합니다.
- 휴대용 고효율 공기 청정기의 설치와 가능한 최고 효율 제품으로의 건물 공기 필터 업그레이드 및 사무실 및 기타 공간에 외부 공기의 양을 늘리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하는 변경사항 적용을 검토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소매업체는 고객들이 물리적인 거리 두기를 준수할 수 있게 시각적인 표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서 매장 앞 연석 또는 수령 지점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거기에서 구입한 상품을 가정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해야 합니다.
- 직원 및 고객 간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물리적인 가림막 또는 시각적 표시(예: 바닥 표시, 색상 테이프, 또는 직원 및/또는 고객이 서 있어야 하는 위치를 가리키는 표지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계산대에서 계산원과 직원이 서로 노출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렉시글라스 가림막 설치와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 고객 및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업무 방법 변경을 요청하는 직원의 제안을 수락하는 쪽을 고려해 보십시오(예: 계산원에서 창고 관리로 변경하기 또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원격 근무로 관리하기).
- 직접 만나서 하는 회의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고 물리적인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더 적은 수의 인원이 시설에서 회의를 하도록 회의를 조정하십시오.
- 바이러스 전파를 제한하기 위해 최소 6피트 거리두기를 확보하도록 밀폐된 구역 내에서는 작업자 수에 추가 제한을 적용하십시오.
- 시간차 교대 근무 직원은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물리적 거리두기 절차를 유지합니다.

- 휴게실을 폐쇄하거나 장벽을 사용하거나 테이블/의자 사이의 거리를 늘려 직원들을 분리하고 휴식 중에 모여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차양과 좌석 배치로 실외 휴식 공간을 만듭니다.
- 매장 내 주류 바, 병에 담아갈 수 있는 서비스 및 공공 좌석 구역을 폐쇄하고 제품의 샘플 제공을 중단하십시오.
- 고령자 및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쇼핑 시간을 따로 정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 시간 이후마다 매장 전체를 청소하십시오.
- 매장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주문 및 밖에서 포장된 상품을 받아가는 서비스와 같은 포장 및 배달 서비스를 늘리십시오.
-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될 수 있으면 입구와 출구를 확실하게 따로 지정하십시오.
- 최대 수용 인원의 50%가 넘지 않게 시설 규모에 따른 최대 수용 인원을 조정하여 한 번에 매장 내에 있게 되는 인원수를 제한하십시오.
- 시각적인 표시를 사용하는 등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객들도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하십시오.
- 직원들에게 조수석 창문을 통해서 고객에게 말한다거나 접촉하지 않고 고객의 트렁크에 바로 물품을 싣거나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두고 가는 방법 등을 통하여 물리적인 거리 두기 수칙을 실천할 것을 장려하십시오.
- 되도록이면 포장된 물품을 받아가는 위치 또는 배달하는 위치를 일정하게 정해서 직원/고객 접촉을 최소화하십시오.
- 되도록이면 선반과 게시판 같은 운반 보조 용품을 설치하여 사람 사이에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일을 줄이십시오. 되도록이면 배달 확인 서명 시 비접촉방식을 사용하십시오.
- 매장 직배송 시간대를 확장하여 배달 이용수를 늘리고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하십시오.

1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추가적인 준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용 업무 공간은 반드시모든 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의 지침을 비롯하여 <u>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u> 및 <u>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CDPH)</u>의 지침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